# 서울특별시 120다산콜재단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 1. 심사경과

가.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나. 제출일자 : 2016년 10월 31일

다. 회부일자 : 2016년 11월 3일

라. 상정결과 : 제271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6년 11월 30일, 상정·원안가결)

# 2. 제안설명의 요지(시민소통기획관 서정협)

# 가. 제안이유

- 서울시에서는 시민중심 맞춤형 종합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정전문상담기관의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시민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시민중심의 소통행정을 실현 하기위하여 서울특별시 120다산콜재단 설립을 추진중에 있어.
- 이에 따라 2017년 서울특별시 120다산콜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2017회계연 도 서울특별시 세출예산에 출연금을 반영하고자「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에 따라 120다산콜재단 출연여부에 대하여 미리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 나. 주요 내용

- (1) 출연 개요
  - 대상기관 : 서울특별시 120다산콜재단
  - 관련법령 :
    - (공통)법령 : 민법 제32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조례 : 서울특별시 120다산콜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
- (2) 주요 내용
  - 서울특별시 120다산콜재단
    - 시정·구정 상담서비스 제공
    - 시민소통 상담 데이터베이스 관리 및 분석
    - 상담 전문인력 확보 및 양성
    - 시민중심 맞춤형 상담서비스 발굴

- 시정상담 서비스의 효과적 전달방안 연구
- 시정 특수목적 및 임시 상담서비스 수탁 수행
- 재단 사업관련 업무시설 관리
- 상담관련 전산장비 구축·운영 및 관리
- 그 밖에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 (3) 출연의 필요성

- 시민중심 맞춤형 종합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정전문상담기관 기능수행을 위해 재단 출연금 및 현물출연 필요
  - 자율성과 책임성 확보를 통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서비스 제공 필요
  - 정보통신 환경 발달로 단순상담에서 전문상담 또는 특화상담 수요 증가
  - 상담관련 과학적 데이터 축적과 분석을 통해 시정서비스 개발 및 제공

# 다. 참고사항

(1) 관계법령: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수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2) 예산조치: 2017년도 예산편성 및 현물출연
- (3) 합의 : 해당사항 없음
-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김남중)

# 가. 동의안 개요

○ 본 동의안은 120다산콜재단을 설립 추진중에 있어「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의<sup>1)</sup> 규정에 따라 서울시가 2017회계연도에 출연하고자 하는 사무에 대해 미리 서울특 별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임.

# 나. 출자·출연시 지방의회 사전의결 의무화

○ 정부는 2014년 5월 개정된「지방재정법」에서 선심성·낭비성 출자·출연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에 지방의회의 사전 의결을 의무화함에 따라 행정자치부는 2015년 10월 관련 규정 해석을 통해 매년 다음 회계연도 출자·출연금 편성전에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하는 모든 행위(신규, 기존, 법정 모두 포함)에 대해 지방의회의

<sup>1)</sup>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 결을 얻어야 한다.

사전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음.

- 이 조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이 보조금과 달리 예산집행 후 사후 정산을 의무화하지 않는 사정을 고려해 출자·출연에 대한 지원절차를 강화하고 엄격히 제한함으로서 선심성·낭비성 출자·출연을 방지하려는 취지로 해석됨.
- 이에 따라 120다산콜재단의 출연여부에 대한 동의를 얻고자 본 안건을 제출하였음.

# 다. 출연의 타당성

- 120다산콜재단은「서울특별시 120다산콜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따라 설립될 기관이며, 시민중심 맞춤형 종합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정전문상담기관의 기능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됨.
- 재단설립을 위한 출연안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업성과에 대하여 논할 수 없으나 가시적으로 향후 5년간은 민간위탁 대비 재단출연을 통한 운영비에 절감할 수 있도록 그 결과가 나타나야 할 것임. 또한 시민에게 맞춤형 종합상담 서비스 제공을 통해 서울시 원스톱・맞춤형 시정상담 서비스 전문기관이 되어야 할 것임.

<향후 5년간 재단운영비 추계>

구분 소 계 2017년 2020년 2018년 2019년 2021년 민간위탁 107,729 22.838 20,291 20,900 21,527 22,173 재단운영 104,229 20,380 19,865 20,576 21,318 22,090

(단위:백만원)

재 단 운 영	인건비	70,091	12,913	13,442	13,994	14,570	15,172
	제경비	30,450	$6,428^{2)}$	5,786	5,928	6,077	6,231
	자산 및 물품	3,138	888	538	554	570	588
	기본재산	50	50	_	_	_	_
	예비비	500	100	100	100	100	100
				•	•	•	

# ※ 향후 5년 간 민간위탁 방식보다 총 35억원 적게 소요

○ 행정조직의 특성상 계속하여 성장할 것이 예측되는 바, 재단의 예산운영의 효율성 강화 및 자체 수익사업 발굴 및 운영을 통해 재단의 재정 안정성을 도모해야 할 것임.

# 라. 종합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2017년 4월 개관 예정인 「120다산콜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120다산콜재단 출연여부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요청하기 위해 제출되었는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 기준 및 내용에 있어 법률적 기준에는 문제

<sup>2) 2017</sup>년도 민간위탁 3개월분을 재단 운영비로 환산하면서 발생한 차액 274백만원은 제경비로 간주

요소가 없는 것으로 보여 타당하다고 판단됨.

○ 서울시는「120다산콜재단」이 기존 120다산콜센터가 가진 한계점을 극복하여 응답률을 높이고(현재 87%→목표 95%) 질 높은 시정정보 안내기관으로 거듭나게하여야 할 것인 바,

향후 5년간은 기존의 운영방식인 민간위탁회사에 지급하던 관리비 및 이윤을 재단 출연 후 상담사 처우개선 예산으로 사용하는 등 운영비가 감소할 것으로 보이나 그 이후에는 재단 자체 재정 안정성 강화방안을 마련해야할 것으로 보임.

#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의**: 120재단 운영에 있어 응답율을 95% 기준으로 잡고 예산편성한 사유는? 또한, 120재단 설립시 조직의 규모를 생각해 보아야함. 초기부터 크게 하면 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

답변: KS기준 응대율 95%를 목표로 하여 산정한 인원이며, 내·외부 전문가 자문, 직무설계 등을 통해 적정운영 방안을 검토하여 반영토록 하겠음.

질의: 120 재단의 상담사 고용문제에 대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건지?

답변: 상담사 고용문제는 양도양수에 의한 방법, 경력경쟁시험 두 가지 방법으로 논의 중으로 양쪽 모두 장단점이 있으며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의원님들의 의견도 듣고 취지를 충분히 살릴 수 있는 방안으로 결정이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5. 토론요지 : 없음.

6. 소위원회 심사보고 요지 : 구성하지 않았음.

7. 심사결과 : 원안 가결(출석위원 전원 찬성)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서울특별시 120다산콜재단 출연 동의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16년 10월 31일 제 출 자 : 서 울 특 별 시 장

### 1. 제안이유

- 가. 서울시에서는 시민중심 맞춤형 종합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정전문상담기관의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시민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시민중심의 소통행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120다산콜재단을 설립을 추진하고 있음.
- 나. 이에 따라 2017년 설립예정인 서울특별시 120다산콜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2017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세출예산에 출연금을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120다산콜재단 출연여부에 대하여 미리 그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 가. 출연 개요

○ 대상기관 : 서울특별시 120다산콜재단

- 관련법령:
  - (공통)법령 : 민법(제32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조례 : 서울특별시 120다산콜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
    - "시장은 재단의 설립·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다."

# 나. 주요 사업

- 서울특별시 120다산콜재단
  - 시정·구정 상담서비스 제공
  - 시민소통 상담 데이터베이스 관리 및 분석
  - 상담 전문인력 확보 및 양성
  - 시민중심 맞춤형 상담서비스 발굴
  - 시정상담 서비스의 효과적 전달방안 연구
  - 시정 특수목적 및 임시 상담서비스 수탁 수행
  - 재단 사업관련 업무시설 관리
  - 상담관련 전산장비 구축·운영 및 관리
  - 그 밖에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 다. 출연의 필요성

- 시민중심 맞춤형 종합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정전문상담기관 기능수행을 위해 재단 출연금 및 현물출연 필요
  - 자율성과 책임성 확보를 통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서비스 제공 필요
  - 정보통신 환경 발달로 단순상담에서 전문상담 또는 특화상담 수요 증가
  - 상담관련 과학적 데이터 축적과 분석을 통해 시정서비스 개발 및 제공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수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나. 조치사항 : 2017년도 예산편성 및 현물출연

다. 합 의: 해당사항 없음

※ 작성자 : 시민봉사담당관 120운영팀 오정환 (☎2133 -6548)